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6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1.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04. 08.
다. 상정·의결일자 : 2024. 04. 1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가. 제정이유

-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이 필요함. 이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국가연령별 표준화 자살률 23.6명, OECD 평균 11.1명의 2배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 제2조의2, 제10조, 제13조, 제17조
-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복지지원과-8119(2024. 2. 23.) 검토의견 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제3조제1항(자살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제3조제1항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함

-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4-3호
 - 가) 예고기간: 2024. 2. 13. ~ 2024. 3. 4.(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안 제4조)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고, 필요시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안 제5조)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상담·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4. 1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